

행정관리담당관

행정관리담당관실

1.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

□ 기본방향

-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직제로의 전환
- 정부의 「작은 정부 구현」에 부합토록 개편
- 지방교육의 특수성 제고를 위한 기구모형 개발

□ 추진내용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근거를 시·도에 위임토록 교육부에 수차건의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('95. 7. 26.)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

□ 향후 추진과제

- 도교육청 보조기관 설치조례 제정
 - 사유 : 종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함.
 - 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('95. 7. 26.)
 - 시기 : 대통령령 개정이후 ('95. 10월 예정)
 - ※ 직제개편 세부사항은 관련조례 제정시 상세히 보고
- 지역교육청 구성 및 기능 개선
 - 추진주체 : 대통령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추진과제
 - 시기 : '95년도 하반기중
 - ※ 통·폐합 기준, 대상 등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음.

2.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

□ 기본방향

- 정부의 「공무원 총정원 동결수준 운용」 방침에 부응하여 인력증원 최대한 억제
-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등 신규 인력수요는 기존 잉여인력을 우선적으로 상계조정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만 증원
- 교육행정기관의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급학교의 원활한 교단지원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인력 배치에 중점

□ 상반기 정원조정 내용

○ 증 원 (178명)

-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(4교, 2기관) 34명
- 학교급식 확대 실시 (59교) 97명
- 통·폐합 국교 통학버스 운용 (28교) 28명
- 기타 (학급수 증가 등) 19명

○ 감 축 (79명)

- 학교 통·폐합 등 66명
- 청주·충주교육청 관내 국교 차량 감축 13명

□ 향후 추진과제

○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조례 제정

- 사 유 : 종래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함.
- 근 거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('95. 7. 26.)
- 시 기 : 법령 개정이후 ('95. 10월 예정)

3. 교육행정전산망 구축

□ 추진목적

- 공문서 수발 전산화
 - 공문서 수발시간 단축으로 도·농간 원근감 해소
 - 공문서 수발 소요인력을 학교현장에서 활용
 - 교육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 절감
- 교육행정 정보 공유화
 - 각종 교육통계, 행사 및 교육행정 정보 수록
 - 자치법규 수록
 - 각종 회보의 송·수신

□ '95년도 추진계획

- 접속기관 : 96기관
(교육청 11, 직속기관 6, 특수학교 8, 고등학교 71)
- 확보예산 : 8억 4,137만원
- 정상 운영시기 : '95. 12월중

□ 향후 추진계획

- '96년도
 - 국·중학교 접속을 위한 기반 조성
 - 지역교육청에 전산실 및 전산기기 확보
 - 소요예산 : 6억 8,274만원
- '97년도
 - 국·중학교 전산망 연결
 - 소요예산 : 6억 7,000만원

□ 기대효과

- 모든 교육기관을 온라인 시스템화하여 추진목적 달성

4. 교육행정 전산 프로그램 개발

□ 기본방향

- 전산화 효과가 큰 반복적·정형적 업무 우선 개발
- 교단지원을 위한 교원업무 간소화 대상 업무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- 물품관리 프로그램 개발
 - 보급시기 : '95. 4. 27.
 - 대 상 :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
 - 효 과
 - 물품의 체계적 관리
 - 물품관리 업무의 신속성 제고
- 학생 건강기록부 프로그램 개발
 - 보급시기 : '95. 5. 12.
 - 대 상 : 도내 모든 국민학교
 - 효 과
 -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학생 건강관리
 - 교원업무 경감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- 교무일지 및 학습지도안 프로그램 개발
 - 보급시기 : '95. 12월중
 - 대 상 : 도내 모든 중·고등학교
 - 효 과
 - 신속한 업무처리로 교원업무 경감
 - 교수-학습지도의 효율성 제고